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예우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사랑지원반’ 신설 등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기능 일부 조정(안 제7조)
-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 내지 제8조의3)
- 『기업의 날』 지정 기업 지원근거 신설(안 제9조)
-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의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조정(안 제10조)
 - 최고기업인 부문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분 시상
 - 최고근로자 부문 남녀 근로자 구분 시상 등

- ‘산업평화상’ 시상은 타 조례와 중복으로 삭제(안 제11조)
 -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부문’과 중복
-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종류 확대(안 제12조, 제13조)
 -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외 2개 항목 신설 등
- 기업애로 해소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대책기구인 ‘기업사랑지원반’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 기업애로상담관의 임기, 역할 등 운영규정 신설(안 제29조)

4.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6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118회 정례회시 기업인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기업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조례제정 후 시행상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 주요 내용은
 -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표로 구성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에서 ‘위원 호선제’로 하여 지원 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며, 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또한, 구미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시상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였으며 시상시기를 매월에서 연1회로 조정하여 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하고자 하였으며
- 「구미시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 조례」의 ‘산업평화부문“과 중복된 산업평화상 시상은 삭제하고
- 각종 수상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예우 항목에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단체 행사시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무료 이용 등을 추가하였음
- 한편 기업 활동중에 느끼는 각종 불편과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업사랑지원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신속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